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38호)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0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부품개발’ 개념 도입	4
2.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9
3. 방위산업진흥원 재원, 수익사업 및 분원 설치	18
4. 방위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 근거 마련 ...	20
5. 방위산업진흥원 대한 권한의 위임 등 근거 마련 및 연구원 직원의 공무원 의제	23
※ 참고자료	
1.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 규정	26
2.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주요 기관 현황	28
3. 최근 4년간 주요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31

I. 제안경위

발 의 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발의연월일	2024. 9. 13.	2024. 9. 20.
회부연월일	2024. 9. 19.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학·연 집적 등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

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와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 품목 조사·분석·공개 등의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 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부품 국산화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확대·독립을 통하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독립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 ·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부품개발’ 개념 도입

- 두 개정안(강명구의원안·구자근의원안)은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인 ‘부품국산화’ 용어를 선제적 부품개발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부품개발’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강명구의원안·구자근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생략)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개발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개발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u> 로 선정하여 <u>부품 국산화개발 사업</u> 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u>부품개발 사업자</u> ----- ----- <u>부품 개발 사업</u> 을 ----- -----.	② ----- ----- ----- ----- ----- <u>부품개발</u> ----- ----- <u>부품 개발</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u>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u> 로 선정된 자(이하 “ <u>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u> ”라 한다)가 실시하는 분	③ ----- ----- <u>부품개발 사업자</u> ----- ----- <u>자</u> ----- ----- “ <u>부품개발사업자</u> ” ----- -----	1의2. 제18조에 따른 방 <u>위산업진흥원</u>

현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u>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u>를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u><신설></u> ⑤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은 <u>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u>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u>부품개발 사업에</u> ----- ----- ----- -----. ④ ----- ----- <u>부품개발사업자</u>----- ----- -----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진흥원에 <u>부품개발 사업</u>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⑥ ----- ----- ----- <u>부품개발사업자</u>----- ----- -----. 1.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 -----<u>부품개발</u>----- ----- -----<u>부품개발사업자</u>----- ----- <u>부품개발</u>----- ----- -----. ④ ----- -----<u>부품개발사업자</u>를----- ----- ----- -----. ⑤ ----- -----

현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2. <u>부품 국산화개발</u>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⑥ 방위사업청장·각군참모총장·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u>국산화개발된</u>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 <u>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u>의 선정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u>부품개발</u> ----- ----- ⑦ ----- ----- ----- ----- <u>개발된</u> ----- ----- -----. ⑧ <u>부품개발사업자</u>----- ----- ----- ----- ----- -----.	----- ----- <u>부품</u> <u>개발사업자가</u>----- ----- -----. 1. (현행과 같음) 2. <u>부품개발</u>----- ----- ⑥ ----- ----- ----- ----- <u>개발</u> <u>된</u>----- ----- -----. ⑦ <u>부품개발사업자의</u>--- ----- ----- ----- -----.

□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의 개발 소요를 발굴하도록 하고, 해당 부품을 개발할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국산화로 개발된 부품에 대한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국산화개발을 장려하고 있음.²⁾

□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장비·부품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을 의미함.³⁾

기존에는 부품 수입품을 대체 개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고난도 첨단부품을 자체 개발하기에는 부품 국산화개발 개념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엔진 등 일부 핵심부품은 무기체계

-
-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⑥ 방위사업청장·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된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3)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방위사업청훈령)제3조 (정의) ① (생략)
2.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부품(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보다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여 선제적 부품 개발이 필요한데, 수입품의 대체품 개발로는 시급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대체하도록 하여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입 부품을 후발적으로 국산화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등 방산부품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⁴⁾

4) 추가 자구 수정 사항으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부품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 개정안은 방위산업진흥 및 방산부품 개발·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인 ‘방위산업진흥원’을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및 자금융자 및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진흥과 부품개발, 부품 성능시험 및 관련 정책·제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강명구의원안·구자근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 ----- 방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8조(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방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삭 제>	<삭 제>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삭 제>	<삭 제>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삭 제>	<삭 제>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삭 제>	<삭 제>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삭 제>	<삭 제>

현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삭 제>	<삭 제>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삭 제>	<삭 제>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 에 대한 업무지원	<삭 제>	<삭 제>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 원	<삭 제>	<삭 제>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사후관리	<삭 제>	<삭 제>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 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 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삭 제>	<삭 제>
<신 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신 설>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원(分院)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 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

현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u><신설></u> <u><신설></u>	8. <u>해산에 관한 사항</u> ④ <u>진흥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⑤ <u>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1. <u>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u> 2. <u>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u> 3. <u>방위산업 부품·장비 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u> 4. <u>방위산업 부품 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u> 5. <u>방위산업 부품 개발</u> 6. <u>방위산업 부품 개발 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u> 7. <u>방위산업 부품·장비 개발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u> 8. <u>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행·지원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u> 9. <u>방위산업 부품 표준의 개</u>	<u>항</u> 7. <u>이사회에 관한 사항</u> 8. <u>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9. <u>해산에 관한 사항</u> ④ <u>진흥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⑤ <u>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 ⑥ <u>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1. <u>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u> 2. <u>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u> 3. <u>방위산업 부품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u> 4. <u>방위산업 부품개발</u> 5. <u>방위산업 부품개발 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u> 6. <u>방위산업 부품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u> 7. <u>방위산업 부품개발 기술 지원 및 사업관리</u> 8. <u>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행 및 지원</u> 9. <u>방위산업 부품 표준 개발</u>

현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u>발 및 보급</u> 10. <u>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u> 11. <u>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u> 12. <u>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u> 13. <u>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u> 14. <u>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u> 15. <u>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u>	<u>및 보급</u> 10. <u>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u> 11. <u>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u> 12. <u>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u> 13. <u>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u> 14. <u>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사후관리</u> 15. <u>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u>

□ 현행은 개정안의 방위산업진흥원의 업무인 ‘방위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방산부품 국산화·관리 등’은 국방진흥기술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⁵⁾)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음.

□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품국산화가 아닌 선제적인 자체 부품개발이 필요함.

5) 「국방기술품질원 정관」 제16조의2(부설기관) ① 기품원은 제4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둔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혁신적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부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등’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부품개발, 부품 성능시험 수행, 부품 표준 개발 등’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어 부품개발 관련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첨단부품의 고난도·고비용성에 따른 개발 실패 가능성 때문에 업체는 개발에 소극적이며, 무기체계 운용유지에 있어 부품 단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 자체의 부품개발 수행 등 부품관리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기존의 업무 외에 ‘방위산업 부품 개발, 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행·지원, 방위산업 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가하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정부 주도의 자체 부품개발과 전문적인 업체 부품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여 방산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부품관리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⁶⁾

6) 부품개발 전담기관 신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방산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2024.2.)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양산 단계에서 해외 부품의 공급이 불안정할

□ 다만, 개정안에서의 '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은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업무는 '부품 국산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기획·평가 및 관리 등 사업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개편할 경우 국방과학기술촉진 사업 지원 업무 수행기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1년 이후 인사 및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예산이 증액되어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독립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진흥원의 직접적 설립 이유인 '부품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수행 등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2024년도 예산은 1,232억원으로⁷⁾ 상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재정 투입 대비 성과 등의 분석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경우 무기체계 개발/양산 지연으로 전력화 지연 발생하고 현행 체계에 따른 부품국산화 사업의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부품개발 전담기관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 소요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하여 국방기술연구소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 부품국산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한국생산성본부 및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산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2024.2), 페이지 176~242 참조]

7) 동 예산은 연구개발활동비,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구성됨.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현황]

과 제	개 요	지원 대상	24년 예산
핵심부품 국산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과제를 선정 후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체계개발,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455.33 억원
수출연계 부품 국 산화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E/L 등)을 부품 국산화 과제로 선정 후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체계개발,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중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257.95 억원
전략부품 국산화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외도입 부품	411.62 억원
일반부품 국 산 화 시험평가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 무기체계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승인받은 업체가 자체 개발 하고, 개발성공 시 시험평가비 일부를 지원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수입부품	25억원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이러한 현실에서 다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확대 개편을 통한 기관의 설립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 및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방향’⁸⁾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부품개발과 부품 성능시험 수행은 부품개발 관련 민간기업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2024년 8월 27일 상정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며,⁹⁾ 이와는 별개로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제정안)이 2024년 9월 23일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 상정 및 심사¹⁰⁾를 앞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기관의 설립은 현행 관련 기관 등의 역할을 분석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과학기술 기획·평가 등의

8) 기획재정부는 22년 12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공공기관 정원을 12,442명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관별 혁신계획을 마련하였음. 국방기술품질원은 조직통합 및 대부서화를 위하여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62→54)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9) 동 개정안은 2024년 6월 25일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41호) 하였음. 주요내용은 부품개발·성능시험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설립하여 1. 부품개발, 2. 부품 성능시험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3. 부품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부품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10) 동 제정안은 2024년 9월 23일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75호) 하였고, 주요내용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상호 업무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재정부도 정부 주도로 부품 직접 개발이 필요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및 분야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등의 활용을 통해 개발을 할 수 있고, 민간 주도로 부품개발이 필요할 경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의 R&D 사업 등을 통해 민간의 부품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의 기능 중복 및 부품 개발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부동의하는 입장임.

- 이하에서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유사 출연기관과의 기능 조정 등이 검토되어 동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간략하게 검토함.

3. 방위산업진흥원 재원, 수익사업 및 분원 설치

- 개정안은 방위산업진흥원의 재원을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제6항 등).

[강명구의원안·구자근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정부는 ----- -----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제4항 ----- ----- 출연하거나 보조----- -----.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사무소 소재지 외에 지역 방위산업에 특화된 지역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제6항----- ----- --출연하거나 보조할-. ⑧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⑩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강명구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신설>	령령으로 정한다. 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위 사항은 현행 국방과학연구소,¹¹⁾ 국방기술품질원^의의 재원 충당
입법례와 유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안 제18조제8항 등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조직
및 인력의 확대에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재원)① 연구소의 설립비, 건설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
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방위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신설되는 방위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군수품과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강명구의원안·구자근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18조의2(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현행 「방위사업법」 제32조의2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방위산업진흥원은 그 법적 성격이나 재원조달 방법, 조직운영 등이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국방진흥기술연구소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유재산 특례 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12)13)

□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따라서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더라도 무상 사용허가 등의 특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동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전에도 무상대부 등의

12) 「방위사업법」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제9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3) 「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의 충돌 소지를 없애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무상대부 특례가 반영되어야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로 수정이 필요함.

5. 방위산업진흥원 대한 권한의 위임 등 근거 마련 및 연구원 직원의 공무원 의제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 권한의 일부를 방위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또한 방위산업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장명구의원안·구자근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u>장</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장, 진</u> <u>흥원의 장 또는</u>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국방기술품질원의</u> <u>장, 진흥원의 장</u> ----- ----- ----- -----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현행 「방위사업법」 제61조제1항에서 방위산업부품연구원과 그 법적 성격이 유사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음.

□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준용규정과 벌칙조항 적용에서 공무원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¹⁵⁾

15) 「방위사업법」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개정안의 방위산업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진흥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 운동과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¹⁶⁾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¹⁷⁾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정치 운동을 허용하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대한 개정안¹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중이므로 동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과 국회심사 경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12

16)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7) 헌법재판소 2023. 5. 19. 접수 2023헌가16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위헌제청

18)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0일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심사중임.

※ 참고자료

1.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 규정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개정 2014. 5. 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4., 2020. 3. 31., 2023. 6. 20.>

1. - 4. 삭제<2020. 3. 31.>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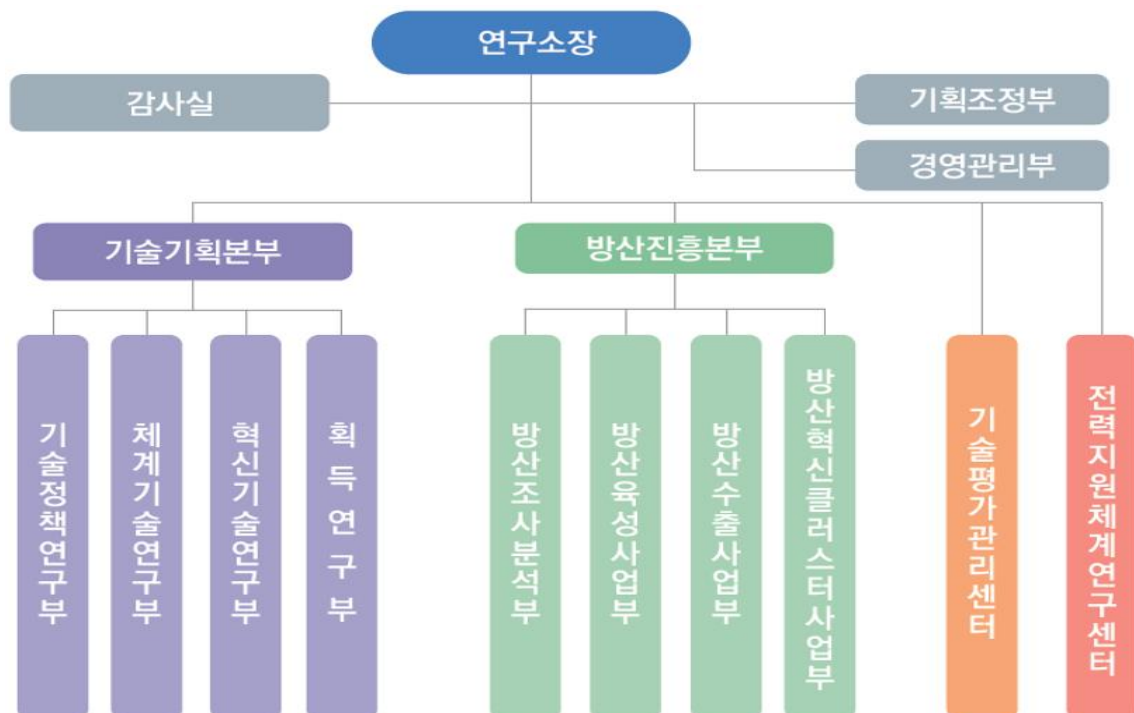
2.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주요 기관 현황

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요업무

- (기술기획)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방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기획관리 전담
- (방위산업지원)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지원사업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연구 성과 및 성공여부를 점검
- (전력지원체계 연구)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사업관리와 품질보증업무 수행

○ 조직도



나. 국내 방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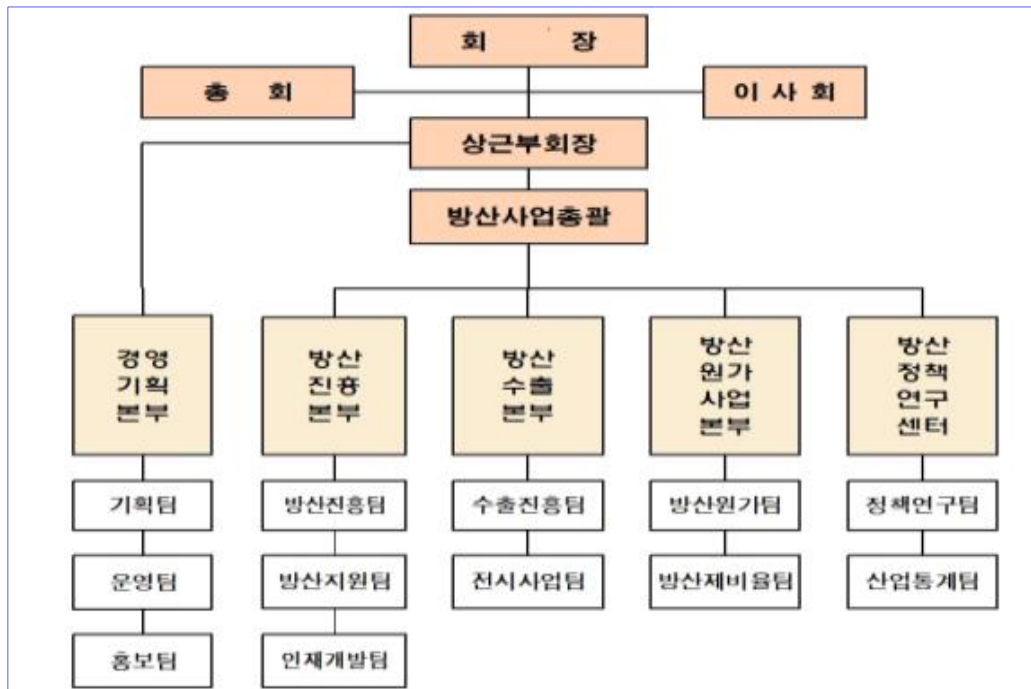
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설립목적

- 방위산업관련 조사·연구,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

* 회원사(방산업체 및 방산유관업체) 간 네트워크 구성 등

○ 조직도



○ 주요사업

- (방산진흥본부) 체계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지원 등
- (방산수출본부) 수출 마케팅, 전시회 지원 등
- (정책연구센터) 방위산업 통계, 정책연구 수행 등

○ 주요연혁

- '76.3월 : 한국군수산업진흥회 창립
- '79.4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명칭 변경
- '06.3월 : 방위사업청 법인설립 허가
- '24.현재 : 제18기 임원진 구성 및 운영

○ 일반현황

- 회장 :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 회원사 : 703개사(정회원 : 81개, 준회원 622개)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상근인력 : 56명(상근부회장 최병로)

2)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 설립목적

- 방산중소벤처기업체의 상호교류 및 중소기업 방위산업 육성 등

○ 주요사업

- 중소기업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 방위산업 분야 학술지 발간, 연구용역 및 컨설팅 사업
- 수출촉진, 경쟁력 향상, 네트워크 구축 등

○ 주요연혁

- '20.6월 : 설립허가(제1대 회장 연합정밀 김용수 대표)
- '20.6월 ~ '23년 : 코로나 및 제1대 회장 사임으로 협회 활동 제약
- '24.1월 : 제2대 회장 네비웍스 대표 취임 및 협회사무실 이전
- '24.9월 : 국회 대토론회(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 개최

○ 일반현황

- 회장 : 원준희 (네비웍스 대표)
- 회원사 : 25개사
-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 상근인력 : 1명(윤웅중 전무)

* 네비웍스 임직원 2명 사무 지원 중이며, 상근조직 확대 중

3. 최근 4년간 주요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계약연도	수출대상국	수출품목	계약금액
2021	인도네시아	T-50	2.4억불
	필리핀	초계함	5억불
2022	필리핀	원해경비함	5.7억불
	폴란드	K2 전차(1차)	33.6억불
	폴란드	K9 자주포(1차)	24.0억불
	폴란드	천무(1차)	35.5억불
	폴란드	FA-50	30.2억불
2023	말레이시아	FA-50	9.2억불
	튀르키예	전차 부품	2.9억불
	루마니아	신궁	-
	호주	레드백 장갑차	25.0억불
	폴란드	K9 자주포(2차)	26.7억불
2024	폴란드	천무(2차)	16.4억불
	페루	함정 건조	4.7억불
	앙골라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	0.1억불
	루마니아	K9자주포	10억불
	미국	지원함 정비사업	-

*자료: 방위사업청